

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

(제34조의2제2항제1호 관련)

1. 평가기준

구 분		10점	9점	8점	7점	6점	5점	4점	3점	2점	1점
남 자	100미터 달리기 (초)	13.0 이내	13.1~ 13.5	13.6~ 14.0	14.1~ 14.5	14.6~ 15.0	15.1~ 15.5	15.6~ 16.0	16.1~ 16.5	16.6~ 16.9	17.0 이후
	1,000미터 달리기 (초)	230 이내	231~ 236	237~ 242	243~ 248	249~ 254	255~ 260	261~ 266	267~ 272	273~ 279	280 이후
	윗몸일으키기 (회/1분)	58 이상	57~55	54~52	51~49	48~46	45~43	42~40	39~36	35~32	31 이하
	좌우 악력 (kg)	64 이상	63~61	60~58	57~55	54~52	51~49	48~46	45~43	42~40	39 이하
	팔굽혀펴기 (회/1분)	61 이상	60~56	55~51	50~46	45~40	39~34	33~28	27~22	21~16	15 이하
여 자	100미터 달리기 (초)	15.5 이내	15.6~ 16.3	16.4~ 17.1	17.2~ 17.9	18.0~ 18.7	18.8~ 19.4	19.5~ 20.1	20.2~ 20.8	20.9~ 21.5	21.6 이후
	1,000미터 달리기 (초)	290 이내	291~ 297	298~ 304	305~ 311	312~ 318	319~ 325	326~ 332	333~ 339	340~ 347	348 이후
	윗몸일으키기 (회/1분)	55 이상	54~51	50~47	46~43	42~39	38~35	34~31	30~27	26~23	22 이하
	좌우 악력 (kg)	44 이상	43~42	41~40	39~38	37~36	35~34	33~31	30~28	27~25	24 이하
	팔굽혀펴기 (회/1분)	31 이상	30~28	27~25	24~22	21~19	18~16	15~13	12~10	9~7	6 이하

2. 평가방법

- 가.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.
- 나.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, 1,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,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- 다.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3. 성적 계산 방식

- 가. 체력검사 성적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,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평가한 종목별 합산 점수에 0.96을 곱한 후 무도 분야 자격증 2·3단을 보유한 경우 1점을, 4단 이상을 보유한 경우 2점을 더하여 계산한다.
- 나.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인정되는 무도 분야 자격증의 종류는 경찰청장이 정한다.